

# 醫 療 法 施 行 規 則 -II-

[1962. 5. 7 保社部令第77號

改正 1963. 6. 1 保社部令第110號

1964. 11. 23 保社部令第143號

## 第 5 章 醫 療 機 關 的 管 理

第25條 (管理者) ①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法第4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에게 該當 醫療機關을 管理하였을 때에는 10日 以內에 當該 醫療機關을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다음 各號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66. 8. 5 保令 161>

1. 管理者의 住所·姓名
2. 管理者의 資格 및 免許番號

② 管理者를 變更하였을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26條 (開設者 또는 管理者의 遵守事項) 醫療機關의 開設 또는 管理者는 患者妊婦 또는 解產婦를 入院시킬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入院室의 定員을 超過하여 入院시키지 말 것.
2. 入院室은 男女別로 區別할 것.
3. 入院室이 아닌 場所에 患者, 妊婦 또는 解產婦를 入院시키지 말 것.
4. 精神病患者 또는 傳染病 患者는 各各 精神病院入院室 또는 傳染病入院室 以外에는 入院시키지 말 것.
5. 病毒傳染의 憂慮가 있는 患者와 其他의 患者를 同一한 入院室에 入院시키지 말 것.
6. 病毒傳染의 憂慮가 있는 患者가 入院하였던 入院室 및 그 被服·寢具·食器 等은 完全히 消毒한 後가 아니면 使用하지 말 것.

第27條 削除<1865. 8. 5 保令 161>

第28條 (醫療機關의 報告書)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別紙 第14號 書式에 依한 報告書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 每年 12月

末日 現在로 翌年 1月末까지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を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서울特別市·釜山市에 있어서는 管轄 區廳長·道에 있어서는 管轄市長 또는 郡守를 거쳐야 한다. <改正 1966. 9. 12 保令 183>

1. 病床數
2. 入院患者實數의 總病床日數
3. 退院患者數
4. 外來患者實數와 總外來患者數
5. 傳染病防法에 依한 第1種, 第2種, 第3種 傳染病의 病別·診斷患者의 實數와 死亡者數

第29條 (醫療機關 등의 休業·廢業·再開業·移轉 기타 變更事項의 申告) ①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助産員이 그 醫療業務 또는 그 助産業務를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하거나 그 醫療機關 또는 助産業務의 場所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19號 書式에 依한 申告書를 그 移轉하고자 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法第40條의 規定에 依한 非營利醫療機關에 있어서는 그 移轉하고자 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を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그 醫療機關의 構造 또는 施設이나 기타 許可 또는 申請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20號 書式에 依한 申告書를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法第40條의 規定에 依한 非營利醫療機關에 있어서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を 거쳐 保健社會

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65. 8. 5 保令 161>

第30條 (診療에 관한 諸記錄의 保存)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記錄을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1. 患者의 名簿
2. 患者의 診療記錄
3. 處方箋
4. 手術記錄
5. 檢査所見記錄
6. 放射線寫眞 및 所見書
7. 看護記錄

第30條의 2 (醫事監視員) 法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醫事監視員은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場 또는 道知事가 그 소속 公務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1966. 9. 12 保令 183>

1. 醫師·齒科醫師는 漢醫師 또는 助産員의 免許가 있는 者.
2. 醫事に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改正 1965. 8. 5 保令 183>

## 第 6 章 醫療機關의 規格 및 施設基準

第31條 (規格 및 施設基準) ① 法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規格 및 施設基準은 다음과 같다.

### 1. 診療室

診療室은 各 診療科目別로 設置할 것. 但 1人의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2人以上의 診療科目을 擔當할 때에는 診療에 特別한 支障이 없는 한 同一한 診療室을 使用할 수 있다.

### 2. 入院室

(가) 入院室은 地下 또는 3層 以上에는 設置하지 아니할 것. 但 耐火構造로 하여 2 以上の 階段과 避難階段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나) 入院室의 面積은 患者 1人을 收容하는 것에 있어서는 63平方미터 以上, 患者 2人以上을 收容하는 것에 있어서는 患者 2人에 對하여 4.3平方미터 以上으로 하여야 하며,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에 있어서는 患者

總數가 20個 이상 있어야 할 것. <改正 1966. 9. 12 保令 183>

(다) 小兒患者단을 收容하는 入院室의 面積은 前(나)에 規定하는 入院室의 面積의 3分の 2 以上으로 할 수 있다.

(라) 入院室은 그 面積의 14分の 1에 相當하는 面積을 窓으로 하여 直接外氣에 面하여 開放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精神病患者入院室·傳染病患者入院室 또는 結核病患者 入院室을 當該醫療機關을 他部分 또는 外部에 對하여 危害 防止 또는 傳染豫防을 爲한 遮斷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할 것.

### 3. 産室

産室의 面積은 9平方미터 以上으로 할 것.

### 4. 手術室

(가) 手術室을 綜合病院·外科·整形外科·神經外科·胸廓外科·産婦人科·眼科·耳鼻咽喉科·皮膚科·泌尿器科·中 1科目 以上을 診療하는 病院·醫療 또는 齒科病院 및 口腔 外科를 診療하는 齒科醫院에 있어서 當該 醫療機關에 適合하도록 設置할 것. 但 患者 2百人 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綜合病院 病院 또는 齒科病院의 手術室은 3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나) 手術室에는 準備室을 附設하여 塵埃를 防止할 수 있게 하고 그 內壁全部를 不浸透 質로 하여야 하며 適當한 暖房·照明·滅菌 手洗·手術用被服·繃帶材料·機械器具·消毒 및 排水의 施設을 할 것.

### 5. 救急室

救急室은 外部로부터 交通이 便利한 곳에 位置하고 産室 또는 手術室으로부터 隔離되어야 하며 救急用諸般施設을 할 것.

### 6. 臨床病理檢査施設

臨床病理檢査施設은 綜合病院·病院 및 內科 또는 小兒科를 診療하는 醫院에 있어서는 그 面積이 9平方미터 以上을 設置하여야 하며 化學微生物·血液·血清 또는 病院 등의 檢査에 必要한 顯微鏡 其他의 施設을 할 것.

## 7. 調製室

〈改正 1965.8.5 保令 161〉

調製室에는 다음과 같은 設備가 있어야 할 것

가. 調製室

나. 水道 또는 調製用水設備

다. 上血天秤

라. 藥品의 混合裝置

마. 液量計

바. 기타 調劑에 필요한 裝置

사. 調劑를 행하는 藥局은 적어도 2平方미

터 이상의 面積이 있어야하며 天井 및 地面은 세멘트·콘크리트·타이루 또는 板子로 하여야 하며 다른 場所와 明確히 區分되어야 할 것.

아. 調劑用醫藥品은 그 容器에 醫藥의 表示를 明確히 할 것.

## 8. 消毒施設

消毒施設은 蒸氣가스·藥品에 依하거나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入院患者 및 職員의 被服·寢具·其他 그 使用하던 物品 等의 消毒을 할 수 있게 設備 할 것

## 9. 眼底檢査에 必要한 施設

綜合病院 및 眼科를 診療하는 病院 또는 醫院에 있어서는 面積이 6平方 미터 以上の 眼底 檢査室 및 眼底檢査에 必要한 設備를 할 것.

## 10. 給食施設

給食施設은 入院患者의 全員에게 給食할 수 있는 充分한 施設이어야 하며 冷藏庫를 備置하고 調劑室의 바닥은 耐水材料로써 洗淨 및 排水에 便利한 構造로 하고 食器·野菜 其他에 對한 消毒施設을 할 것.

## 11. 暖房施設

暖房施設은 診療室·救急室·入院室·産室 및 産兒의 入浴施設 等に 對하여 適當할 暖房이 될 수 있는 施設이어야 할 것.

## 12. 給水施設

給水施設은 當該醫療機關의 必要한 場所에 給水할 수 있는 施設이어야 할 것.

## 13. 洗濯施設

洗濯施設에는 病毒이 汚染된 洗濯物과 다른

洗濯物을 分離하여 貯藏하고 洗濯하는 施設과 消毒施設을 할 것.

## 14. 汚物處理施設

汚物處理施設에는 病毒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憂慮가 있는 汚物을 處理할 수 있는 燒却爐·淨化槽 其他의 施設을 할 것.

## 15. 齒科技工室

齒科技工室은 防塵施設 其他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16. 防虫施設

入院室·手術室·産室·臨床病理檢査室·病理解剖室·食堂·調理室·配膳室·消毒施設·汚物處理 施設 및 便所 等の 窓戶에는 鐵糸網의 施設을 하거나 其他 適當한 防虫施設을 하여 蠕虫 等の 侵入을 防止할 것.

## 17. 施設 等の 間隔

消毒施設·洗濯施設·汚物處理施設 또는 便槽 其他 汚物溜는 入院室·食堂·調理室 또는 配膳室로부터 相當한 間隔이 있도록 할 것.

## 18. 防火施設

火氣를 使用하는 場所에는 必要한 防火施設을 할 것.

## 19. 危害防止措置

診療에 使用하는 電氣·電熱蒸意 또는 가스 施設에는 危害 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

## 20. 待期室

〈新設 1966.9.12 保令 183〉

患者가 待期하는 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1. 沐浴室

〈新設 1966.9.12 保令 183〉

患者의 沐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2. 處置室

〈新設 1966.9.12 保令 183〉

患者에 對한 簡單한 治療 또는 手術을 하는 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3. 分娩室

〈新設 1966.9.12 保令 183〉

妊婦가 安全 分娩을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

積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施設을 할 것.

#### 24. 分娩待期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妊婦가 分娩前 待期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5. 暗室(眼科暗室 또는 放射線暗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暗室로서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6. 物理療法施設(皮膚科 또는 整形外科)

〈新設 1966. 9. 12 保令 183〉

患者를 治療하는데 支障이 없는 場所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7. 石膏繃帶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石膏繃帶를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8. 放射線透視攝影治療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透視·攝影 및 治療를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29. 判讀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放射線 撮影 필름의 判讀을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30. 乾燥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放射線 撮影 필름을 乾燥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31. 麻醉科準備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麻醉準備를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 32. 回復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手術後 患者의 回復과 事後處理를 하는데 支障이 없는 面積이어야 하며, 이에 必要한 施設을 할 것.

② 綜合病院과 病院에 있어서는 法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에 別表 1에 의

한 診療科目別 施設을 具備하여야 한다.〈新設 1966. 6. 12 保令 183〉

#### 第32條 (醫療機關의 從業員의 標準) ① 醫療機關은 다음의 標準에 依하여 醫師·齒科醫師·漢醫師·看護員 其他의 從業員을 두어야 한다

1. 醫師(齒科에 있어서는 齒科醫師) 1日 平均 入院患者 20人對 1人 또는 外來患者 30人對 1人의 比率로 두고 短數마다 1人을 增加할 것.

#### 2. 漢醫師

當該 醫療機關의 診療業務에 適合한 人員을 둘 것.

#### 3. 藥 師

1日 平均 調劑數 80에 1人의 比率로 두고 그 端數마다 1人을 增加할 것.

#### 4. 看護員

1日 平均 入院患者 5人對 2人 또는 外來患者 30人對 1人의 比率로 두고 그 端數마다 1人을 增加할 것.

#### 5. 助產員

產婦人科에 있어서는 前號에 依한 看護員數의 3分の 1 以上으로 할 것.

#### 6. 榮養士

患者 50人 以上을 入院시킬 수 있는 綜合病院 또는 病院에 있어서는 1人을 둘 것.

#### 7. 事務員 其他 從業員

當該 醫療機關의 實情에 適合한 人員을 둘 것.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患者數는 前年度의 1日 平均數로 한다. 但 新規開設 또는 再開設의 境遇에는 推定數에 依한다.

第33條 (齒科病院의 施設) 齒科病院은 第31條 第1號·第2號·第4號 乃至 第6號 第8號·第10號 乃至 第15號의 施設과 放射線 裝置를 具備하여야 한다.

#### 第34條 (醫院·齒科醫院 또는 漢醫院의 施設) ①

醫院·齒科醫院 또는 漢醫院은 다음의 表에 依한 施設을 具備하여야 하며 入院患者를 取扱하고자 하는 醫院 또는 齒科醫院에 있어서는 第31條 第2項의 入院室을, 產室 具備하려는 病院에 있어서는 同條 第3號의 產室을, 手術

室을 具備하려는 醫院 또는 齒科醫院에 있어서는 同條 第4號의 手術室을 臨床病理檢査施設을 具備하려는 醫院에 있어서는 同條 第6號의 臨床病理檢査 施設을, 眼底檢査 施設을 具備하려는 醫院에 있어서는 同條 第9號의 眼底檢査施設을 追加具備하여야 한다.

區 分	醫 院		齒科醫院		漢 醫 院	
	施 設	最少坪數	施 設	最少坪數	施 設	最少坪數
人口 50萬 以上の 市	診 療 室 調 劑 室 毒 害 施 設 待 合 室	8	診 療 室 消 毒 施 設 待 合 室 技 工 室	8	診 療 室 藥 室 待 合 室	8
人口 5萬 以上 50萬 以下の 市	同 上	7	同 上	7	同 上	6
人口 5萬 以下の 地 域	同 上	6	同 上	6	同 上	6

〈改正 1963. 6. 1 保社令 110〉

② 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醫院이 그 醫療機關에 勤務하지 아니하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에게 그 施設을 使用하게 하고 있을 境遇의 當該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本法 施行當時 이미 開設하고 있는 醫院 또는 齒科醫院으로서 그 施設이 外來 診療에 適合한 것인 때에는 當該 醫院 또는 齒科醫院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施設을 使用하게 할 수 있는 醫院 또는 齒科醫師의 數는 當該 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病院의 診療 科目別 寢臺數의 10분의 1 以內로 한다.

④ 專門醫資格을 가진 者가 그 專門科目을 標榜하는 醫院이나 非專門醫가 診療科目을 表示하는 醫院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에 그 專門科目 또는 診療科目에 해당하는 施設을 別表에 의하여 具備하여야 한다.

〈新改 1966. 9. 12. 保令 183〉

## 第 7 章 公 醫

第35條 (公醫의 業務報告) 公醫는 法第53條 各號의 業務執行 狀況을 每月 末日 現在로 翌月 5日까지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傳染病

其他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疫病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36條 (公醫의 巡廻) 公醫는 그 地域內를 每月 2回 以上 巡廻하여야 하며 特히 交通이 不便한 僻地居住者의 保健改善을 留意하여야 한다

## 第 8 章 診療엑스線危害의 防禦

第37條 (엑스線裝置의 申告) 診療用 엑스線裝置 (이하 “裝置”라 한다)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그 設置日로부터 10日이내에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다음 各號의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1. 醫療機關의 名稱 및 所在地
2. 裝置의 製作者名·型式 및 臺數
3. 裝置의 定格出力
4. 엑스線診療室의 엑스線障害防禦에 대한 構造設備과 豫防措置의 概要
5. 엑스線診療에 종사하는 醫師齒科·醫師 및 엑스線士의 姓名과 그 엑스線診療業務에 종사한 經歷

〈改正 1966. 9. 12 保令 183〉

第38條 (變更 등의 申告)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前條 各號의 事項을 變更하거나 그 裝置의 사용을 廢止한 때에는 그 變更 또는 廢止한 날로부터 10日이내에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 (엑스線 診療室의 防禦) ① 裝置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그 엑스線 診療室의 天井·바닥 및 壁의 外側에 있어서는 엑스線의 線量率은 다음 表에서 定하는 線量率이하가 되도록 그 防禦設備을 하여야 한다. 다만, 間接 撮影을 實施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區 分	每週延使用時間	線量率
診斷用	3時間미만	每時間32 미리렌트겐
	3時間이상	每時間時16
	6時間미만	미리렌트겐

	6時間 以上	每時間 8
	12時間 미만	미리렌트겐
	12時間이상	每時間 4
		미리렌트겐
治療用	24時間미만	每時間 4
		미리렌트겐
	24時間이상	每時間 2
		미리렌트겐

② 小容量 診斷用(最大管電壓 60K.V.P 10m. A 이하) 엑스線裝置를 診療室내에 設置使用 하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도 그 診療室에 前項의 規定에 의한 防禦를 設備하여야 한다.

〈改正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의 2(엑스線 從事者の 許容被照射線量등) 엑스線 診療에 종사하는 醫師 齒科醫師 및 엑스線士 등(이하 “엑스線 從事者”라 한다)의 最大許容被照射線量 및 最大許容蓄積量은 다음과 같다.

1. 엑스線 從事者の 全身·造血器管生 殖線 및 눈의 水晶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最大 許容蓄積線量은 다음 式(이하 “基本式”이라 한다)에 의하여 算出되는 線量으로 한다.

$$\text{基本式 } D=5(N-18)$$

基本式에서 D는 렌트겐 單位의 線量을, N은 年單位의 年齡을 表示한다.

나.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의 限度 안에서 3月間에 3렌트겐까지의 被照射를 許容할 수 있다.

다. 엑스線 從事者の 過去에 있어서의 被照射線量이 不明한 때에는 그 不明한 期間은 1年間에 5렌트겐의 比率로 被照射된 것으로 看做하여 蓄積線量을 算出한다.

라. 過去에 1週 0.3當 렌트겐의 被照射 許容條件下에서 종사한 者는 그 蓄積量이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에 이를 때까지 年間 5렌트겐을 초과하여 被照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18歲 이전에 엑스線 作業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는 年間 5렌트겐을 초과하여 被照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30歲에 이르기까지는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다”·“라” 및 “마”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最大許容蓄積線量의 범위 안에서 年間 被照射線量을 12렌트겐까지 許容할 수 있다.

2. 前號에 規定한 이외의 身體部位 또는 器官에 대한 3年間の 最大許容被照射線量은 다음과 같다.

가. 皮膚·骨 및 甲狀線에 대하여는 8렌트겐

나. 手足·前膊 및 足關節에 대하여는 20렌트겐

다. “가”·“나” 및 前號에 規定한 이외의 單一器官에 대하여는 4렌트겐

3. 엑스線從事者の 年間 最大許容 被照射線量은 다음과 같다.

가. 全身·血造器官·生殖線 및 눈의 水晶體에 대하여는 1.5렌트겐

나. 皮膚·骨 및 甲狀線에 대하여는 3렌트겐

다. 手足·前膊 및 足關節에 대하여는 7.5렌트겐

라. “가”내지 “다”에 規定한 이외의 單一器官에 대하여는 1.5렌트겐

4. 엑스線으로 인한 事故로 2.5렌트겐 미만의 被照射를 받았거나 또는 蓄積線量이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되는 數值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線量을 2렌트겐으로 除하여 얻은 數의 年數를 경과할 때까지는 基本式에 의하여 算出된 數值에 그 초과된 線量을 加算한 線量을 許容線量으로 한다.

5. 被照射線量을 算出함에 있어서 診療를 받기 위하여 被照射된 線量과 自然放射線에 의하여 曝된 線量을 除外한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의 3(엑스線裝置의 測定과 記錄) 裝置를 設置하고 있는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6月마다 1회이상 그 裝置의 照射線量을 測定하여 그

結果를 記錄하여야 하며 이를 5年間保存하여야 한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의 4 (엑스線從事者の 健康管理) ① 裝置를 設置한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엑스線從事者の 엑스線으로 인한 障礙豫防 및 障害有無를 위한 健康診斷을 每年 2回 이상 實施하여 그 結果를 記錄하여야 하며 이를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은 다음 各號에 의한 問診·檢査 또는 檢診의 方法으로 行한다.

1. 問診은 다음 事項에 대하여 行한다.

가. 엑스線으로 인한 職業性障害의 有無  
나. 障害症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業務場所·業務內容·業務期間 및 蓄積線量  
다. 기타 放射線에 의한 被曝狀況

2. 檢査 또는 檢診은 다음에 대하여 行한다.

가. 皮膚  
나. 末梢血液 중의 白血球·赤血球數 및 血色素量

다. 末梢血液像<新設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의 5 (放射線障害者の 보고)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行한 結果 엑스線으로 인한 障害가 發生하였다고 인정되는 엑스線 從事者가 있을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第39條의 6 (엑스線 防禦施設의 改修命令)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당해 裝置의 防禦施設을 調査하고 그 結果障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防禦施設의 改修를 命하여야 된다. 前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1966. 9. 12 保令 183>

第40條 (限地醫療業者의 從事地域指定 等) 法附則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地域은 本令 公布日로부터 60日 以內에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여 公告한다.

第41條 (醫療機關의 施設利用) 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病院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當該 醫療機關診療業務에 支障이 없는 限 그 建物

의 一部設備機械 및 器具를 그 醫療機關에 從事하지 아니하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診療 또는 研究에 使用하게 할 수 있다.

第42條 (採血 및 輸血業務를 行하는 醫療機關) 採血 및 輸血業務를 行하는 醫療機關은 臨床病理檢査施設과 적어도 다음 各號의 器具 및 試藥과 施設이 있어야 하며, 採血에 있어서는 1人當 1回 240cc와 480cc를 單位로 하고 抗凝固劑는 240cc인 경우에는 80cc, 480cc인 경우에는 120cc로 하여야 한다.

1. 器具 및 試藥

가. 冷藏庫 나. 顯微鏡 다. 遠心分離機  
라. 體重器 마. 血壓計 및 體溫計  
바. 乾燥器·滅菌器 및 恒溫槽器  
사. 홀그래스 아. 血球計算器 자. 培養器  
차. 肝機能檢査器  
카. Anti A. Anti B 및 Anti RH  
타. 血色素測定用器具 및 試藥  
파. 梅毒 및 마리아原虫檢査用試藥

2. 施設

가. 待期室 나. 休憩室 다. 採血室  
라. 血液貯藏室<新設 1965. 8. 5 保令 161>

附 則

① (施行日)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本令 施行前에 放射線 裝置를 한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本令 施行日로부터 1月內에 第37條 各號의 事項을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附 則 <1963. 6. 1 保社部令 第110號> 이 令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 第17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4. 11. 23 保社部令 第148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 8. 5 保社部令 第161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 9. 12 保社部令 第 183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完)